

《 2002年度 》 行政事務監查計劃

監查概要

- 기 간 : 제1차 정례회 기간중(7일간) 예정
- 장 소 : 총무위원회실
- 감사위원 : 6명
 - 위원장 : 이문행 의원
 - 간 사 : 신주범 의원
- 감사항목 : 72개
- 감사대상 : 9개 실과소, 읍면

居昌郡議會 總務委員會

2002年度 行政事務 監査計劃

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시정·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1. 監査目的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6조,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
-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
-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찾아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

2. 監査方向

-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의 발굴 ⇒ 격려 및 계승발전
-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문제점 도출 ⇒ 사유규명 및 해결책 강구
- 전체 군민의 이익과 관련부분 중점감사 ⇒ 미래지향적 정책감사 정착
- 군민이 궁금해하는 분야 집중규명 ⇒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

3. 監査施行

가. 기 간 :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(7일간) 예정

나. 장 소 : 총무위원회실

다. 감사주체 :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

- 위원장 : 이 문 행 의원
- 간 사 : 신 주 범 의원
- 위 원 : 이현영, 최용환, 김정희, 신현기

라. 사무보조

- 총 괄 : 의회사무과장
- 전문위원 : 총무위원회 전문위원
- 사무보조 및 속기 : 백영구, 박래만, 고영운

마. 감사대상 기관 : 거창군

- 대상실과소 :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재무과, 사회복지과, 주민자치지원단, 보건소, 문화복지센터, 거창읍 외 11개면

※ 감사중 필요시 보조금 지급 단체도 감사

바. 감사범위(기준) : 2001. 7 ~ 2002. 8월까지 처리한 군정 행정사무 전반 (고유사무+위임사무)
단, 금년도 처리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, 그 이전 처리된 사무도 감사(조례 제6조 3항)

4. 監查資料 및 書類提出 (要求)

가. 감사자료제출

-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
- 감사대상기관(부서)별 감사자료 : 별첨 요구된 자료

※ 자료편철 : 총무위원회 소관 (직제순)

나. 서류제출 : 감사기간중 요구되는 서류

다. 현장확인 : 감사기간중 요구되는 현장

(거창사건위령사업, 청소년수련원, 수송대야외극장, 문화복지센터, 거창정수장 불소화, 북상월성 공원묘지, 위천 공공어린이집, 문화의집)

5. 證人 및 參考人 出席(要求)

□ 공무원 : 본청 실·과·소장

읍면장 (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)

□ 기타증인 : 필요시 출석요구

□ 참고인 : 필요시 출석요구

6. 監査進行

순서	내용	비고
선언·인사	○ 감사 선언 및 위원장 인사	위원장
선서	○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선서	관계공무원
공무원소개	○ 실과장이 담당주사 소개	실과장
감사실행	○ 감사 항목별 감사 (질의 답변) ○ 현장확인 및 관계인 증언	감사위원, 관계공무원
강평·종료	○ 감사종료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	위원장

7. 監査方法

-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증언 선서 후 증언 (선서문 별첨, 참고인 제외)
- 감사는 감사대상기관(부서)별로 해당 부서장이 당해부서의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
- 감사대상업무 분야별 신문은 해당부서장에게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신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,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음 (위원회의 의결로 제한가능)
-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,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
-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,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, 자진출석 및 제출의 형식으로 함
-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감사실시

8. 監査에 따른 留意事項

- 감사의 한계
 -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 됨
- 제척과 회피
 - 감사위원이 감사대상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그 사안에

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음

-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중지시키고,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음

□ 주의의무

-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,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

9. 監査實施結果 處理

- 감사결과는 총무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 채택
- 의장에게 보고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
(감사결과 조치요구)

붙임 : 1. 선서문

2.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목록

宣 誓

本人은 居昌郡議會 總務委員會가
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程에 依하
여 行하는 2002年度 居昌郡行政事務
監査의 證人으로서, 證言을 함에
있어 良心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
이 事實 그대로 말하고, 만일 거
짓말이 있으면 僞證의 罰을 받기로
盟誓합니다.

2002年 9月 日

宣誓人 所屬 :
職位 :
姓名 :

2002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

의원 분야	계	이문행 의원	신주범 의원	이현영 의원	최용환 의원	김정희 의원	신현기 의원
계	72 (22)		13 (5)	17 (5)	12 (2)	15 (2)	15 (8)
기획감사	14 (4)		2	3 (1)	3	3 (1)	3 (2)
문화공보	12 (6)		4 (3)	3 (2)	2	1 (1)	2
종합민원	5 (1)		1	1	1	2	(1)
자치행정	10 (1)		2 (1)	2	1 (1)	1	4
재무	9 (4)		2	(2)		4	3 (2)
사회복지	11 (2)		2	2	2 (1)	3	2 (1)
주민자치지원	1			1			
보건	8 (2)			4	2	1	1 (2)
문화복지 센터	2 (1)		(1)	1	1		

《 2002年度 》 行政事務監查計劃

監查概要

- 기 간 : 제1차 정례회 기간중(7일간) 예정
- 장 소 : 산업건설위원회실
- 감사위원 : 6명
 - 위원장 : 정종기 의원
 - 간 사 : 조선제 의원
- 감사항목 : 119개
- 감사대상 : 7개 실과소, 읍면

居昌郡議會 産業建設委員會

2002年度 行政事務 監査計劃

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가 시정·건의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1. 監査目的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6조,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
-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의정활동과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수집
-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찾아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능률적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

2. 監査方向

-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의 발굴 ⇒ 격려 및 계승발전
- 미진한 업무분야에 대한 문제점 도출 ⇒ 사유규명 및 해결책 강구
- 전체군민의 이익과 관련부분 중점감사 ⇒ 미래지향적 정책감사 정착
- 군민이 궁금해하는 분야 집중규명 ⇒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

3. 監査施行

가. 기 간 :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(7일간) 예정

나. 장 소 : 산업건설위원회실

다. 감사주체 :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

- 위원장 : 정 중 기 의원
- 간 사 : 조 선 제 의원
- 위 원 : 박점용, 정연명, 이수정, 정화석

라. 사무보조

- 총 괄 : 의회사무과장
- 전문위원 :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
- 사무보조 및 속기 : 김종두, 정상준, 정현정

마. 감사대상 기관 : 거창군

- 대상실과소 : 산업과, 지역경제과, 산림과, 건설과, 도시환경과, (수송대관리사무소 포함), 농업기술센터, 수도사업소, 거창읍 외 11개면

※ 감사중 필요시 보조금 지급 단체도 감사

바. 감사범위(기준) : 2001. 7 ~ 2002. 8월까지 처리한 군정 행정사무 전반 (고유사무+위임사무)

단, 금년도 처리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, 그 이전 처리된 사무도 감사(조례 제6조 3항)

4. 監查資料 및 書類提出 (要求)

가. 감사자료제출

-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보고
- 감사대상기관(부서)별 감사자료 : 별첨 요구된 자료

※ 자료편철 :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(직제순)

나. 서류제출 : 감사기간중 요구되는 서류

다. 현장확인 : 감사기간중 요구되는 현장

(_____)

5. 證人 및 參考人 出席(要求)

□ 공무원 : 본청 실·과·소장

읍면장 (읍면장은 필요시 출석요구)

□ 기타증인 : 필요시 출석요구

□ 참고인 : 필요시 출석요구

6. 監査進行

순서	내용	비고
선언·인사	○ 감사 선언 및 위원장 인사	위원장
선서	○ 감사대상기관의 부서장 선서	관계공무원
공무원소개	○ 실과장이 담당주사 소개	실과장
감사실행	○ 감사 항목별 감사 (질의 답변) ○ 현장확인 및 관계인 증언	감사위원, 관계공무원
강평·종료	○ 감사종료 인사 및 감사종료 선언	위원장

7. 監査方法

- 감사위원회에 출석 증언하는 공무원이나 기타 증인은 반드시 증언 선서 후 증언 (선서문 별첨, 참고인 제외)
- 감사는 감사대상기관(부서)별로 해당 부서장이 당해부서의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
- 감사대상업무 분야별 신문은 해당부서장에게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신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며,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음 (위원회의 의결로 제한가능)
-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증인이나 참고인의 요구, 또는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써 비공개로 진행
- 감사중 추가적인 서류제출,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, 자진출석 및 제출의 형식으로 함
-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전체 또는 일부위원으로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장확인 감사실시

8. 監査에 따른 留意事項

- 감사의 한계
 -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여서는 안 됨
- 제척과 회피
 - 감사위원이 감사대상사무에 대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그 사안에

12 (제91회-본회의 부록)

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음

-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를 중지 시키고,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음

□ 주의의무

-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,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됨

9. 監査實施結果 處理

- 감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 채택
- 의장에게 보고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
(감사결과 조치요구)

붙임 : 1. 선서문

2.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목록

宣 誓

本人은 居昌郡議會 産業建設委員
會가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程에
依하여 行하는 2002年度 居昌郡行政
事務監査의 證人으로서, 證言을 함
에 있어 良心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
없이 事實 그대로 말하고, 만일
거짓말이 있으면 僞證의 罰을 받기
로 盟誓합니다.

2002年 9月 日

宣誓人 所屬 :
職位 :
姓名 :

2002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현황

의원 분야	계	위원회 공 통	조선제 의원	박점용 의원	정연명 의원	이수정 의원	정화석 의원
계	119 (8)	49	15 (1)	10	20 (7)	13	12
산업과	20 (2)	7	6		4 (2)	2	1
지역경제	15	7	1	1		2	4
산림과	16 (4)	4	1	2	5 (4)	3	1
건설과	21 (2)	7	1	4	4 (1)	2	3
도시환경	19	7	2	3	3	2	2
농업기술 센터	16	10	3				3
수도사업소	12	7	1	1	1	1	1